제 4 장
원산지 절차

제 4.1 조
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

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5.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그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제 4.2 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계획된 것이라고 수입 당사국이 판단하지 않는 한, 수입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제 4.3 조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그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수입 당사국의 적용 절차에 따라 같은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되거나 보관된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이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되거나 보관된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관세당국이 그러한 운영을 승인한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 4.4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 대해 다음을 요구한다.

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을 통관 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나. 가호의 진술 작성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다. 적용가능한 경우, 제3.14조(직접 운송)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할 것, 그리고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및 다호에 언급된 문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할 것

2. 수입자가 그 진술 작성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진술을 작성하고 부담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다.

3. 수입자가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가 거부된다.

제 4.5 조
특혜관세대우의 수입 이후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는 그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수입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가. 해당 상품이 수입 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수입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 신고서 또는 진술서

나.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그리고

다. 해당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

제 4.6 조
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 4.7 조
형식적 오류

1.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그 오류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2. 수입자는 통지를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의 적절한 정정본을 제출한다.

3. 정정본은 수정 사항, 수정한 날 및 적용가능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발급한 인에 의해 서명된다.

4. 수입자가 제2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정정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4.8조에 따른 검증의 수행에 착수할 수 있

다.

제 4.8 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2.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제1항나호 또는 제1항다호에 따른 요청과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응답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된다.

3.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제1항가호 또는 제1항나호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에 대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가. 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1) 그러한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2)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그리고

3) 그러한 요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입수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에는 문서가 정본인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진술에는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서면진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당국은 검증 방문 30일 이전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통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7.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경우, 상품은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관세의 납부 후에 반출될 수 있다. 검증의 결과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확인되면, 보증금 또는 납부된 관세는 환급된다.

8.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어떤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이미 결정하였던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동일 상품의 모든 후속 수입에 대해 수입자에게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빙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4.9 조
벌칙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인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된다.

제 4.10 조
비밀유지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개되면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비밀유지에 대한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2. 이 장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사법 절차상 이유로 공개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 4.11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12 조
수정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증빙 논거 및 연구 결과와 함께 수정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제안에 대해 제안의 제출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응답한다.

3. 양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5.25조(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따라 설립된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

제 4.13 조
이행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부속서 4가는 제4.1조 및 제4.6조를 대신하여 적용된다.[1)]

2.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이후에는, 제4.1조 및 제4.6조가 부속서 4가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13조와 제3장(원산지 규정)에 사용된 **원산지 증명서**라는 용어는 부속서 4가의 규칙 1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의 의미를 지닌다.

4. 전자본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다음 날부터 1년 후에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 증명 체계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제 4.14 조
공통 규정

1.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법, 규정 및 행정 정책을 통해,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 및 운용에 관한 공통 규정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내에 공통 규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이행한다.

제 4.15 조
정의

1) 부속서 4가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제4.1조와 제4.6조가 적용되기 시작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양 당사국에 의해서 인정된다. 부속서 4가의 규칙 6에 언급된 인 및 수임기관은 부속서 4가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거기에 언급된 문서를 보관한다.

이 장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동일 상품이란 상품에 대해 원산지 상품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부속서 4가
원산지 증명

규칙 1: 원산지 증명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 협정에 따른 특세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부록 4가-1에 있는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규칙 4의 제1항에 명시된 경우, 부록 4가-2에 있는 문안을 사용한 신고서(이하 "원산지 신고서"라 한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규칙 2: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나 그 수출자의 책임하에 있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2]에 의해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문서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수임기관**이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은 수출 이전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조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은 증빙 증거를 요청하고 수출자의 회계에 대한 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은 규칙 1의 가호에 언급된 양식이 적절히 작성되는 것을 보장한다.

규칙 3: 수임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 수임기관의 명칭 및 직인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 수임기관의 명칭 및 직인을 통지한다.

3. 등록부의 어떠한 변경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되며, 그 변경은 통지한 다음 날부터 5일 후 또는 그러한 통지에 적시된 더 늦은 날에 발효한다.

4. 각 당사국의 수임기관은,
   가. 명시된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이 수출되는 탁송화물과 상응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다.

규칙 4: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규칙 1의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나. 원산지 상품을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다만, 탁송화물의 총가격은 미화 2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산지 신고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되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작성된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문서를 수출 당사국 또는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에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영어로 작성된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원산지 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한 수출자는 그 원산지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수입자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규칙 5: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를 서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변경사항을 그것이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국 국내 법령에 명기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규칙 6: 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더불어 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 정보를 그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원산지 증명을 제공하는 수출자는 문제가 되는 원산지 증명의 사본과 더불어 제1항에 언급된 문서를 그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5.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의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문서를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6.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은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부록 4가-1
원산지 증명서

원본

<table>
<tr><td colspan="3">1.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td><td colspan="3" rowspan="3">증명서 번호: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_____ 발급됨
(뒷쪽 설명 참조)</td></tr>
<tr><td colspan="3">2.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td></tr>
<tr><td colspan="3">3.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td></tr>
<tr><td colspan="3">4. 운송 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발 날짜: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td><td colspan="3">5. 비고:</td></tr>
<tr><td>6. 물품의 연번(최대 20)</td><td>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td><td>8. HS 번호 (6단위)</td><td>9. 원산지 기준</td><td>10. 총중량 및 수량 (수량 단위) 또는 다른 단위 (리터, ㎥ 등)</td><td>11. 송장 번호 및 날짜</td></tr>
<tr><td colspan="3">12 수출자 신고:

아래 서명자는 상기의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모든 상품은 _____(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수입국)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td><td colspan="3">13 증명:

수행한 검사에 근거하여,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기술된 상품이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장소 및 날짜, 수임기관의 서명 및 소인)</td></tr>
</table>

뒷쪽 설명

증명서 번호 : 수임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한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생산자들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도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운송 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이 이 란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이 란에 명기될 수 있다.

제6란: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란: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기재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별 3개) 또는 " \ " (사선) 을 더한다.

제8란: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9란: 수출자는 제9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9란에 기입
해당 상품이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WP
해당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 공정 요건 또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SR[3)]
해당 상품이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3) 해당 상품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상품의 생산 시 도달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명기한다. 또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

참조 : 여기의 설명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뒷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제10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1란: 송장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명시된다.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3란: 이 란은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의 권한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소인을 찍는다.

부록 4가-2

원산지 신고서[4]

그 문안이 아래에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가 기재될 필요는 없다.

"이 문서(인증 번호_____[5])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 _____[6]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 기준 _____[7]에 근거하여 신고한다."

_____(장소 및 날짜)[8]

_____

(수출자의 서명, 또한 이 신고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정자체로 명시되어야 한다.)

_____(비고)[9]

---

4) 이 원산지 신고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원산지 신고서가 부속서 4가의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지우고 빈 칸으로 남긴다.

6)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대한민국, 페루).

7)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부록 4가-1의 제9란에서와 같이 명기된다.

8) 동 정보의 표시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생략될 수 있다.

9) 특별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상품이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3.15조가 적용되었음"을 표시한다.

부속서 4나
원산지 증명서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

<table>
<tr><td colspan="3">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td><td colspan="3">2. 포괄확인기간: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_____/__/__/부터 _____/__/__/까지</td></tr>
<tr><td colspan="3">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선택):
이메일(선택):</td><td colspan="3">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td></tr>
<tr><td>5. 물품명세:</td><td>6.
HS품목번호#</td><td>7.
원산지
기준</td><td>8.
생산자</td><td>9.
가치
평가</td><td>10.
원산지
국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11. 비고</td></tr>
<tr><td colspan="6">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들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 이 상품들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이 상품들에 대해 대한민국-페루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 장으로 구성된다.</td></tr>
<tr><td colspan="3">12. 권한있는 서명:</td><td colspan="3">회사:</td></tr>
<tr><td colspan="3">이름:</td><td colspan="3">직책:</td></tr>
<tr><td colspan="3">연도 월 일
날짜: _____/__/__/</td><td colspan="3">전화번호: 팩스:</td></tr>
</table>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2란: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페루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이 여러 번에 거쳐 반복하여 선적되는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가능하게 된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확인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대우가 요청되는 상품의 선적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선택)를 기재한다. 한 명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명기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이메일 주소(선택)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HS 품목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한 상품의 단일 선적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 및 일련번호와 더불어 가능한 경우 상업적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포함한 측정 단위를 기재해야 한다. 그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참조 번호를 명시한다.

제6란: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7란: 제5란의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아래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택일).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원산지 기준

A 해당 상품이 제3.1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B 해당 상품이 제3.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해당 상품이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D 해당 상품이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8란 : 제5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

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 이외에)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제9란: 제5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참조 :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페루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PE"를 기재한다).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 판정 또는 판정의 적용을 받은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비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한다.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이 란에 명시될 수 있다.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참조 : 여기의 설명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뒷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